

한-EFTA FTA 발효 1년
수출입 동향분석

2007. 8.

한국무역협회
통상연구실

차 례

<요 약>

I. 한-EFTA FTA 체결경위 및 협정 주요내용	1
1. 한-EFTA FTA 체결경위	1
2. 한-EFTA FTA 주요결과	1
II. 한-EFTA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	4
1. 개황	4
2. 품목별 수출입	5
IV. 불규칙 요인을 차감한 교역 분석	8
V. 결론 및 시사점	9

[요 약]

- 한-EFTA FTA는 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으며 2006년 9월에 발효
 - EFTA측은 우리로부터의 모든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%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는 EFTA에 대해 상품의 86.3%를 즉시철폐(10년내 99.1% 관세철폐)
- 한-EFTA FTA 발효 후 11개월간 교역실적을 살펴보면 우리의 對EFTA 수출은 발효 전에 비해 35.0% 감소한 반면, 수입은 53.7% 증가하였음

<협정 발효 전후 대EFTA 수출입 동향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국별	발효전 1년 (’05.9-’06.8)		발효후 11개월 (’06.9-’07.7)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
對EFTA	1,589 (46.8)	1,974 (11.4)	969 (-35.0)	2,713 (53.7)
스위스	818 (43.5)	1,215 (8.2)	484 (-34.5)	1,604 (47.3)
노르웨이	730 (55.4)	741 (18.5)	447 (-37.3)	1,090 (65.3)
아이슬란드	37 (-6.7)	13 (-36.8)	34 (-6.0)	15 (24.6)
리히텐슈타인	4 (18.7)	5 (39.1)	4 (7.0)	4 (-6.6)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, ()는 증가율

- 우리나라의 對EFTA 수출이 감소한 것은 발효 직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선박, 금, 그림 등 불규칙 요인이 작용한 품목의 수출이 발효이후 급감한 영향이 큼
 - 협정발효 전에 선박은 대노르웨이 수출이, 금·그림은 대스위스 수출이 급증했던 것으로 이들 품목은 일시적인 해외수요에 따른 것임
 - * 특히 선박의 경우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국제적으로 파나마, 라이베리아 등 국가로의 편의치적이 일반화된 상태로 국가별 교역 실적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음

- 한-EFTA FTA 체결 영향으로 자동차, 공작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, FTA 체결 이전에도 ITA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었던 무선통신기기는 유럽내 경쟁격화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

<협정 발효 전후한 주요 품목의 수출 추이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품목명 (MTI)	관세율	양허	2006.12 수출액	비중 (%)	발효전1년 (‘05.9-’06.8)		발효후11개월 (‘06.9-’07.7)	
			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선박 (7461)	(CH)7.20 Fr./ 100Kg brut	즉시철폐	687	39.7	552	35.0	231	-55.4
자동차 (741)	(CH)14.00 Fr./ 100Kg brut	즉시철폐	396	22.9	349	-31.2	354	8.4
금 (1111)	0%	즉시철폐	224	12.9	256	440.6	19	-100.0
무선통신기기 (812)	0%	즉시철폐	75	4.4	91	-2.6	77	-8.3
그림 (921)	0%	즉시철폐	59	3.4	59	532.7	22	-62.5
금속공작기계 (723)	(CH)4.80~15.00Fr. /100 Kg brut	즉시철폐	10	0.6	8	56.7	9	47.1
공구 (752)	0	즉시철폐	10	0.6	9	16.4	9	11.9
對EFTA 총수출액			1,730	100.0	1,589	46.8	969	-35.0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(CH)는 스위스 약어

- 對EFTA의 수입은 발효 이후 11개월간 53.7%나 증가하여,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
 - 반도체 제조시 활용되는 고순도의 스위스산 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FTA 효과로 기존 수입처로부터의 수입이 스위스로 대거 전환된 영향임
 -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 효과로 인해 의약품, 기계류, 선박용부품 등 전통적으로 EFTA 국가들의 경쟁력이 높았던 품목의 수입도 크게 증가
- 우리측 수입민감성이 감안되었던 수산물의 경우, 양허 폭이 컸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세를 보임
 - 국내산 대체가 어려워 즉시철폐로 분류했던 냉장 및 훈제연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

-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냉동고등어의 수입은 감소

<협정 발효 전후한 주요 품목의 수입 추이>

(단위: 백만 달러,%)

품목명 (MTI)	관세율	양허	2006. 12 수입액	비중 (%)	발효전 1년 (‘05.9-’06.8)		발효후11개월 (‘06.9-’07.7)	
			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원동기및펌프 (711)	8 %	즉시철폐 5년 철폐	243	11.1	221	70.4	161	-18.1
의약품 (2262)	8 %	7년 철폐	179	8.2	157	28.2	179	36.7
기타기계류 (790)	8 %	5년 철폐	160	7.3	122	144.3	197	110.4
선박용부품 (7464)	8 %	5년 철폐	125	5.7	115	21.9	134	31.1
계측제어분석기 (815)	8 %	즉시철폐	137	6.2	120	17.8	141	25.4
금 (1111)	3 %	즉시철폐	35	1.6	19	-60.1	267	1,688.6
對EFTA			2,195	100.0	1,974	11.4	2,713	53.7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- 한편, 선박(MTI 7461), 금(MTI 1111), 그림(MTI 921) 등 불규칙 요인이 큰 품목의 對EFTA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은 발효전 대비 오히려 6.9% 증가함

<불규칙 요인 조정 후 對EFTA 수출입 추이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		발효전1년 (‘05.9-’06.8)		발효후11개월 (‘06.9-’07.7)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
수출	조정 전	1,589	46.8	969	-35.0	
	차감 품목	선박	551	89.5	230	-55.5
		금	256	454/5	8	-100.0
		그림	59	532.7	22	-62.5
	조정 후	723	-1.8	717	6.9	
수입		1,974	11.4	2,713	53.7	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I. 한-EFTA FTA 체결경위 및 협정 주요내용

1. 한-EFTA FTA 체결경위

- 2004. 8-10월 한-EFTA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
- 2005. 1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의 공식협상 후 7월 12일 통상장관회의시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
- 2005. 12. 15 WTO 각료회의(홍콩)시 양측 통상장관간 정식 서명
- 2006. 2. 7 국무회의 의결
- 2006. 6. 30 국회비준동의안 통과
- 2006.9.1. 한-EFTA FTA 발효

2. 한-EFTA FTA 주요 결과

가. 상품

- 양측간 경제발전 정도, 관세율 격차 등을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상품 양허를 하기로 합의
-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(임산물 포함) 및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%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.
- 우리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86.3%를 즉시 철폐하는 한편, 99.1%에 해당하는 상품을 최장 10년(공산품은 7년)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

□ 공산품 양허

- EFTA측은 발효 즉시 공산품 100%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반면, 우리측은 양허율 100%, 즉시철폐 91.1% 등 최장 이행기간 7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
- 단, 원유 및 석유제품 29개 품목(0.3%)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3년후 재검토 항목으로 분류

□ 수산물 양허

- EFTA측은 발효 즉시 수산물 100%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반면, 우리측은 88.4%의 품목을 자유화하며 기타 우리측에 민감한 김, 미역 등 해조류 및 일부 냉동어류 47개 품목을 양허제외로 분류
- 우리 수산업계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냉동고등어 1개 품목에 대하여 쿼터제*를 도입하여 소량의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.
- * in quota 물량인 500MT에 대하여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되, 그 이외의 물량에 대하여는 기존 관세 유지

□ 농산물 양허

- 가공농산물(323개 품목)의 경우 EFTA는 100%, 우리측은 인삼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86.1%의 품목을 자유화함
- 한편, 기본농산물의 경우는 양측 모두 민감 품목이 많아 각국별로 양자 협상을 진행시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
- 우리측 양허 내용
 - 스위스: 치즈 4개 품목에 대해 쿼터 설정 및 10년 철폐, 포도주는 10년 철폐
 - 노르웨이: 기타로 분류된 일부 치즈에 대해 40% 관세 감축
 - 아이슬란드: 말고기에 대해 5년 철폐

- EFTA측 양허 내용

- 우리나라 사과와 배에 대하여 노르웨이는 계절 관세(12월~4월)를 적용키로 했으며 스위스는 in quota내 관세 철폐(TRQ)하기로 함

나. 서비스 / 투자

- 서비스 양허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분야를 규정하였고 양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

다.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

-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
 - 양측은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, MFN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의 특례형태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지정하여(HS 6단위) 동 품목의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가치가 최종 제품가(공장도가격)의 40% 미만일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도록 규정

Ⅱ. 한-EFTA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

1. 개황

- 2006년 9월 1일 한-EFTA FTA 발효 후 11개월간 교역실적을 보면 우리의 對EFTA 수출은 발효 전에 비해 35.0% 감소한 반면 수입은 발효전 대비 53.7% 증가
 - 국가별로는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후 對스위스 수출이 34.5% 감소한 4억 8천4백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, 對스위스 수입은 16억 4백만 달러를 기록해 47.3%의 증가세를 기록
 - 對노르웨이 수출은 발효전 대비 37.3%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65.3% 증가

<EFTA 각국별 교역동향 >

(단위:백만달러,%)

국별	발효전 1년 (‘05.9-’06.8)			발효후 11개월 (‘06.9-’07.7)		
	수출	수입	수지	수출	수입	수지
對EFTA	1,589 (46.8)	1,974 (11.4)	-385	969 (-35.0)	2,713 (53.7)	-1,744
스위스	818 (43.5)	1,215 (8.2)	-397	484 (-34.5)	1,604 (47.3)	-1,120
노르웨이	730 (55.4)	741 (18.5)	-11	447 (-37.3)	1,090 (65.3)	-643
아이슬란드	37 (-6.7)	13 (-36.8)	24	34 (-6.0)	15 (24.6)	19
리히텐슈타인	4 (18.7)	5 (39.1)	-1	4 (7.0)	4 (-6.6)	0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, ()는 증가율

2. 품목별 수출입

- **수출:** 우리나라의 對EFTA 수출이 발효 후 감소세를 보인 것은 발효 전 큰 수출 증가세를 보였던 선박, 금, 그림 등 불규칙 요인이 큰 품목들의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큼

*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규칙 요인이 큰 이들 품목을 對EFTA 수출액에서 제외시키면, 발효후 수출은 6.9% 증가

- 자동차, 공작기계 등의 수출은 관세철폐 효과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으나, FTA 체결이전에도 ITA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었던 무선통신기기는 유럽내 경쟁 심화로 수출이 부진

<협정 발효 전후한 주요 품목의 수출 추이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품목명 (MTI)	관세율	양허	2006.12 수출액	비중 (%)	발효전1년 (‘05.9-’06.8)		발효후11개월 (‘06.9-’07.7)	
			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선박 (7461)	(CH)7.20 Fr./ 100Kg brut	즉시철폐	687	39.7	552	35.0	231	-55.4
자동차 (741)	(CH)14.00 Fr./ 100Kg brut	즉시철폐	396	22.9	349	-31.2	354	8.4
금 (1111)	0%	즉시철폐	224	12.9	256	440.6	19	-100.0
무선통신기기 (812)	0%	즉시철폐	75	4.4	91	-2.6	77	-8.3
그림 (921)	0%	즉시철폐	59	3.4	59	532.7	22	-62.5
금속공작기계 (723)	(CH)4.80~15.00Fr./ 100 Kg brut	즉시철폐	10	0.6	8	56.7	9	47.1
공구 (752)	0	즉시철폐	10	0.6	9	16.4	9	11.9
對EFTA 총수출액			1,730	100.0	1,589	46.8	969	-35.0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(CH)는 스위스 약어

- **수입:** EFTA로부터의 수입 증가세는, FTA 발효 후 관세 철폐 효과로 인해 의약품, 기계류, 선박용엔진 및 부품 등 전통적으로 EFTA 국가의 경쟁력 높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한데 기인

* 우리측 선박, 자동차 등의 對세계 수출호조로 인한 원자재 수입수요 확대 역시 對EFTA 수입을 증가시킴

- 한편 FTA 발효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금의 수입은 FTA의 무관세 혜택(기존 3% → 0%)이 부과되는 영향으로 스위스로의 수입선 전환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음

· 우리나라 대스위스 금 수입의 상당부분은 반도체 제조 Gold Bonding Wire(반도체 칩과 리드프레임을 연결해주는 단자)에 활용

<협정 발효전후 주요품목의 수입추이>

(단위: 백만달러,%)

품목명 (MTI)	관세율	양허	2006. 12 수입액	비중 (%)	발효전 1년 ('05.9-'06.8)		발효후 11개월 ('06.9-'07.7)	
			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원동기및펌프 (711)	8 %	즉시철폐 5년 철폐	243	11.1	221	70.4	161	-18.1
의약품 (2262)	8 %	7년 철폐	179	8.2	157	28.2	179	36.7
기타기계류 (790)	8 %	5년 철폐	160	7.3	122	144.3	197	110.4
선박용부품 (7464)	8 %	5년 철폐	125	5.7	115	21.9	134	31.1
계측제어분석기 (815)	8 %	즉시철폐	137	6.2	120	17.8	141	25.4
금 (1111)	3 %	즉시철폐	35	1.6	19	-60.1	267	1,688.6
對EFTA			2,195	100.0	1,974	11.4	2,713	53.7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- 민감성이 감안되었던 수산물의 수입에서는 즉시철폐의 냉장 및 훈제연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할당관세가 적용되었던 냉동고등어의 수입은 감소하였음

<협정발효전후 우리측 수산물 수입추이>

(단위: 천 달러, %)

품목명 (HS10단위)	관세율	양허	발효 전 1년 (’05.9-’06.8)		발효 후 11개월 (’06.9-’07.7)	
	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냉동고등어 (0303740000)	10%	TRQ 적용 (500MT물량 즉시철폐)	9,175	-46.9	8,257	-8.7
냉동연어 (0303220000)	10%	3년 철폐	12,974	-34.4	22,875	86.7
냉장연어 (0302120000)	20%	즉시철폐	10,957	-2.3	16,138	63.8
훈제연어 (0305410000)	20%	즉시철폐	38	-91.6	401	955.3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IV. 불규칙 요인을 차감한 교역 분석

-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(MTI 7461), 금(MTI 1111), 그림(MTI 921)의 경우, 금액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/특수적 시장요인에 따라 수출이 결정되고 있어 큰 폭의 불규칙 요인을 초래
- 불규칙 요인이 큰 이들 품목을 제외하면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
- 이에 의하면, 한국의 對EFTA 수출이 협정 발효전 대비 6.9% 증가하였으며 對EFTA 수입은 수입전환 효과가 반영되어 53.7% 크게 확대

<불규칙 요인 조정 후 對EFTA 수출입 추이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		발효전1년 (‘05.9-’06.8)		발효후11개월 (‘06.9-’07.7)	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
수출	조정 전	1,589	46.8	969	-35.0	
	차감품목	선박	551	89.5	230	-55.5
		금	256	454/5	8	-100.0
		그림	59	532.7	22	-62.5
	조정 후	723	-1.8	717	6.9	
수입		1,974	11.4	2,713	53.7	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V. 결론 및 시사점

- 한-EFTA는 지난 2006년 9월 발효하여 금년 9월로 1주년을 맞이함
- 한-EFTA FTA 발효이후 우리나라의 대EFTA 수출은 자동차, 공작기계 등 일부품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로는 35.0% 크게 감소하였음
 - 이는 EFTA 발효직전에 실현된 대노르웨이 선박 수출, 대스위스 금과 및 그림 수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큼
 - 발효 이후 자동차, 공작기계 등의 수출은 FTA 발효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수출의 또 다른 축인 무선통신기기는 NOKIA 등 유럽업체와의 시장경쟁에서 고전하면서 수출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임
- 선박·금·그림 등 불규칙 요인이 큰 품목의 수출을 제외할 경우 대EFTA 수출은 FTA에 따른 수출확대효과가 반영되어 6.9% 증가세로 나타남
- 대EFTA의 수입은 발효이후 11개월간 53.7%나 증가하여, FTA의 효과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남
 - 이들 가운데는 우리 반도체 제조시 활용되는 스위스산 금 수입이 급증. 금 수입은 특히 대스위스 수입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기존 홍콩, 미국 등 수입처로부터의 수입이 대거 스위스로 전환되었음
 -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대세계 수출호조와 더불어 한-EFTA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와 맞물림으로써 수출용 자본재로 활용되는 기계류 수입 등이 크게 증가
 - 우리측 수입민감성이 우려되었던 수산물의 경우, 양허 폭이 컸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세를 보임